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조승환 · 박지원
김용태 · 유상범 · 신성범
김상훈 · 강대식 · 강승규
배준영 · 조지연 · 강명구
서천호 · 최은석 · 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. 그러나 적은 인구에 의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

임(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).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2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2조의3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42조의3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 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